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등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55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블랙리스트사태 정의 규정 신설 등	3
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구제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확대	7
3.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예술인보호관의 개방형 직위화	15
4.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자 범위 확대	19
5.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2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32인

나. 발 의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블랙리스트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의 차별적인 문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예술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을 분류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자유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블랙리스트사태를 국가기관, 공공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중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20조).

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1조제2항).

라.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 및 제42조).

Ⅲ. 검토의견

1. 블랙리스트사태 정의 규정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을 ‘블랙리스트사태’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블랙리스트사태”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5. ~ 10. (생 략)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6.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7. ~ 12.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제34조(시정명령) ① ----- ----- -----제2조제12호라목-----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는 국가기관등이 예술을 검열하는 것은 금지하고,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원이나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성과 전파를 방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인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태’¹⁾를 계기로 현행 법률이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에서 기인함.

개정안은 ‘블랙리스트사태’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블랙리스트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임.

1)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발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취지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어 조문간 중복이 우려되고, 블랙리스트사태의 정의 문구는 조문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구제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현행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 중 중대성이 인정되어 조사가 필요한 사건,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 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u>사항</u> 3. ~ 8. (생 략) <u><신 설></u>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u>사항(위원회가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예술인권리 침해행위 중 그 중대성을 인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한다)</u> 3. ~ 8. (현행과 같음) 9. <u>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u>

<u><신 설></u> 9. (생 략)	<u>10. 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 고 인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u> 11. (현행 제9호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0조²⁾에 근거하여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②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③ 예술인 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④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인 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시정명령, 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또한, 현행법 제28조³⁾는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

-
-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 및 시정방안등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⁴⁾하여야 하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제조치등을 심의·의결⁵⁾할 수 있음.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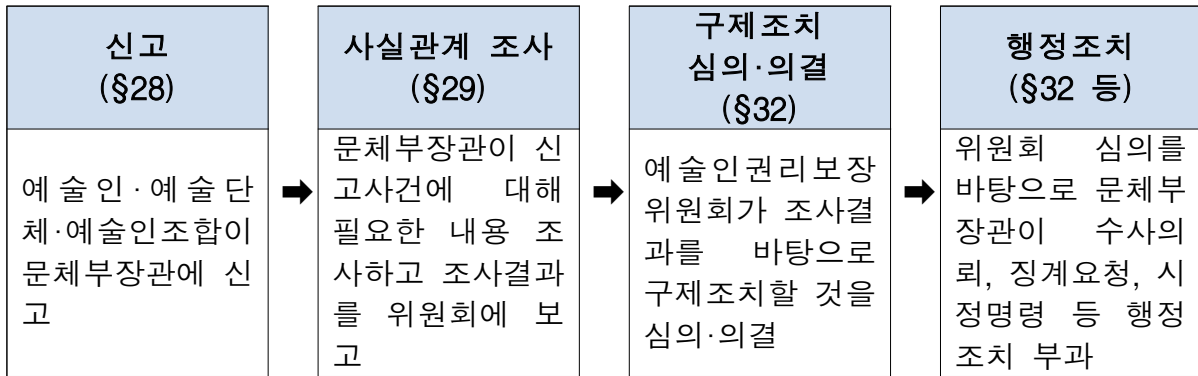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구제절차]



개정안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그 중대성을 인정한 사건을 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근거가 충분하고 내용이 중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며, 블랙리스트사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사항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 이전의 사건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2년 이전의 예술인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피해자 신고가 없지만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예술인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가능하도록 한 안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독자적인 행정 권한을 보유한 행정위원회는 아니나, 현행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시정명령 및 징계 등 형벌적 효과가 있는 침익적 처분을 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는 이 법 제정·시행과 함께 새롭게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⁶⁾으로 현행법 제정·시행

6)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아닌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경우, 舊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후 현행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삭제됨.

舊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전에 성립된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을 적용하여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것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블랙리스트사태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 의한 예술인의 간섭·배제·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조사 및 처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제조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할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부여할지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00400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사건과 달리 직권조사는 사실관계부터 조사관이 직접 파악해야 하므로 수사권이 없는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의 신고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조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조사 권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예술인보호관의 개방형 직위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구제 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전원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예술인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예술 및 <u>예술인의</u>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u>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② ----- <u>예술인의 표현의 자유,</u> ----- ----- ----- ----- <u>중에서</u> ----- ----- <u>위촉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u>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u>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 ----- -----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u> (생 략)	<u>⑥</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1조⁸⁾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동조에 근거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는 12명 전원이 민간 위원으로, 4급 상당의 문체부 공무원이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분쟁조정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인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지정되어 있음.

-
- 8)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술인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예술인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개방형 직위 임용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에 전문적인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제27조제1항은 예술인보호관 직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9)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4.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자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의 범위에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이 아닌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u>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u>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u>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제1항¹⁰⁾은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외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계 내에서 신고가 없어 구제되지 못하고 있던 권리침해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 1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 예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신고를 허용하여 조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술인권리침해 신고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성과 전파 활동 방해, 예술단체의 명단 작성 및 작성 지시, 예술지원사업 선정 심사 방해, 심사관련 문서의 조작, 예술지원 배제 및 포기 강요, 불이익조치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 또는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신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41조</u>(과태료) (생략)	1. <u>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자</u> 2. <u>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자</u> 3. <u>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한 자</u> 4. <u>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u> <u>제43조</u>(과태료) (현행 제41조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4조¹¹⁾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 사실 공포 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41조¹²⁾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예술인이 입게 되는 직·간접적 피해에 비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등이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명단을 작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지원사업의 심사 방해·조작·배제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1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포,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는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배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인정됨.

다만, 현행법의 제정 심사 당시 법무부에서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 또는 직권남용죄¹³⁾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형벌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경우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술 분야의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음.

참고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제재 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현행법 개정안 2건¹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상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개정안의 벌칙 조항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13)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904호),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30호)

및 직권남용죄 등과 중복되므로, 과징금 등 시정명령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사건 현황 : 총 313건('24.6월 기준)
-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289건
-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 24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현황>

(단위: 건, '24.6.10. 기준)

신고유형 연도	불공정한 계약 강요 (제13조제1호)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제13조제2호)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제13조제3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제13조제4호)	불이익 계약 강요 (제13조제5호)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제16조)
2022.9.25.~	7	19	5	-	2	5
2023	12	83	10	3	19	6
2024	2	61	2	-	10	9
소계	22	182	19	3	40	24
신고유형 연도	예술의 자유 침해 (제7조)	예술지원사업 차별 (제8조)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제9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제14조)	불이익조치 (제38조)	합계
2022.9.25.~	3	1	1	-	-	43
2023	4	2	3	-	-	178
2024	-	2	3	1	2	92
소계	8	5	7	1	2	313

* 신고인의 신고 당시 신청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사실조사 과정에서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권리침해 유형 및 관련 조항은 변경될 수 있음.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24.6.10. 기준)

사실조사 (위원회 상정 포함)	종결	시정명령	시정권고	분쟁조정	계
185	59	41	5	23	313